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가축(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령 알림(수정)

1.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제4장 4.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치 요령
2. 우리 부는 충남 천안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확인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합니다.
3.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고병원성 AI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소독 등 조치로 전파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입니다.
4. 지자체 및 관련기관(단체)에서는 동 명령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의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역본부는 중앙점검반이 지자체 방역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반 구성 및 복무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적용기간) 2024. 1. 6.(토). 13:00 ~ 1. 7.(일). 13:00 (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4. 1. 6. 13: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4. 1. 6. 16:00부터 적용

나. (적용지역) 충남, 경기 남부 20개 시·군*, 세종

* 화성, 평택, 오산, 안성, 용인, 이천, 여주, 부천, 광명, 시흥, 안산,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수원, 성남, 하남, 광주, 양평군

다. (적용대상) 산란계 관련 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 방역조치 대응요령

○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설치 및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중지(제한) 이행여부 점검

- 시군구에서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이행상황 확인 후 시도 AI 상황실 또는 동물방역 담당부서에 결과 제출(1회/일), 해당 시도는 관할 시군구에서의 이행사항을 집계하여

우리 부 AI 상황실(전자우편:fmdai@korea.kr)로 제출(1회/1일, 매 12시간 마다)

- (거점소독장소 지정) 신규 설치 또는 기존시설을 활용하거나 지자체 보유 소독차량, 소방차량 등을 이용한 임시 거점소독장소를 설치하고, 일시 이동중지(제한) 시행 중 축산차량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
- 축산차량이 가금류 관련 축산시설을 방문하였는지 여부를 KAHIS의 축산차량 등록체제의 GPS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하고,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
 - 시도(시군구) 방역담당자는 사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방역감시과)에 KAHIS 조회를 위한 권한 부여 요청을 통해 권한을 받아 돌 것
- 지자체는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고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점검계획을 마련하여 축산농가, 축산관계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시설 등), 가축시장(전통시장 포함) 및 가든형 식당 등에 대하여 점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제4항에 따라 상황전파 및 공고문 게재 등 조치

< 충청남도 >

- 해당 지자체(시도 및 시군)는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관내 모든 가금 농가 및 관련 시설·축산차량으로부터 소독실시 사진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사진 확인 실적을 제출할 것
- 해당 지자체(시도 및 시군)는 점검반(시군별 1개반 이상)을 구성 운영하여 가금 농가 및 관련시설 등에 대한 소독 및 일시이동중지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제출할 것

< 국방부 및 경찰청 >

- 지자체가 설치하는 이동통제초소 운영 지원 및 축산관련 차량 이동중지 실시 여부 단속 협조
 - * 각 지자체는 관할지역 군부대 및 경찰청에 사전 지원 및 협조 요청

< 농림축산검역본부 >

- 점검단을 구성하여 지자체 조치사항 및 이동중지 이행상황 점검
- 지자체가 KAHIS의 축산차량등록시스템 GPS 정보를 활용하여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각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 KAHIS 조회 권한 부여
 - *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사전에 KAHIS의 GPS 검색 권한 요청

- 지자체와는 별도로 명령대상 가금관련 축산시설에 축산차량의 출입정보를 지역별, 시간대별 점검
 - 이동중지 종료 후 지자체에 축산시설 출입정보가 있는 축산차량 자료를 제공하고, 위반 여부 및 고발 등 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우리 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에 제출
- GPS를 장착한 차량 및 명령 대상자에게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 시행과 관련된 내용 SMS 등을 활용하여 안내

< 농협경제지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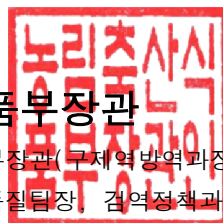
- 공동방제단을 활용, 주요 도로 및 방역취약지(소규모 및 특수 가금류 농가 등)에 대한 일제소독
 - 농협경제지주(친환경방역부)에서는 매일 소독 실적을 취합하여 우리 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전자우편: fmdai@korea.kr)로 제출

< 가금관련 협회, 계열화사업자 등 >

- 소속 회원농가에 대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준수하고, 소유 차량(GPS 미등록 자가용포함) 및 농가에 대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홍보(SMS 발송 등) 실시
 - 각 협회 및 계열화사업자는 회원(소속) 농가를 대상으로 시간대 별로 SMS 등을 통해 홍보 후 실적을 우리 부 AI 상황실(전자우편:fmdai@korea.kr)로 제출

- 붙임 1.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2.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운영계획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구제역방역과장), 축산정책과장, 축산경영과장, 축산환경자원과장, 축산유통팀장, 농축산위생품질팀장, 검역정책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방역감시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역학조사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위험평가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동식물빅데이터팀장), 서울특별시(동물보호과장), 부산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대구광역시(농산유통과장), 인천광역시(농축산과장), 광주광역시(농업동물정책과장), 대전광역시(농생명정책과장), 울산광역시(농축산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동물위생방역과장), 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남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전라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전라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정책과장), 행정안전부장관(가축질병재난대응과장), 환경부장관(생물다양성과장),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보건연구과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질병대응팀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질병연구팀장), 국립생물자원관장(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장), 질병관리청장(신종감염병대응과장), 국립축산과학원장(가축질병방역과장), 농촌진흥청장(재해대응과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국방부장관(재난안전관리과장), 경찰청장(위기관리센터장), 경찰청장(치안상황대응과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농협경제제주 대표이사,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 (사)한국육계협회,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사단법인 한국계란산업협회,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사)한국오리협회, 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장

주무관

손기창

사무관

대결 2024. 1. 6.

김석재

협조자

시행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229 (2024. 1. 6.)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556

팩스번호 044-863-9210

/ goodluck79@korea.kr

/ 대한민국 공개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